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8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전진숙 · 김선민 · 서영석
김 윤 · 남인순 · 김정호
이인영 · 이정문 · 박 정
이수진 · 전용기 · 오세희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

제47조제7항제2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제47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이거나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⑥ (생 락)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 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⑦ ----- ----- ----- ----- ----- ----- ----- -----.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 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 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 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 는 약국	1. ----- ----- ----- ----- ----- ----- ----- -----
가. ~ 바. (생 락) <신 설>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 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 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u>

<u>사.·아.</u> (생략)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 바. (생략) <u><신설></u> <u>사.·아.</u> (생략) ⑧ ~ ⑪ (생략)	<u>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u> <u>아.·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2. -----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u> <u>아.·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⑧ ~ ⑪ (현행과 같음)
---	---